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0,949,912	17, 128, 497
일반회계		557,292,354	16,718,771
특별회계		13,657,558	409,727
	기타특별회계	13,657,558	409,72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82,375	44,471
	주차장 특별회계	10,607,903	318,237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90,575	11,71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07,400	12,222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769,305	23,079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없음.
-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40,968천원으로 한다.
- 제 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4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